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6

발의연월일: 2020. 6. 12.

발 의 자:김종민·최강욱·신동근

전용기 · 김승남 · 정청래

전해철 · 이상직 · 유정주

이수진 • 박주민 • 이낙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의 과반수를 법무부장관과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법률 제 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 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

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생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2
함한 <u>7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u>9명</u>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사람</u>	② <u>어느</u>
<u>이 된다</u>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
	<u>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	<u>는 변호사 1명</u>
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u>1명</u>	
<u> <신 설></u>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
	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
	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
	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u><신 설></u>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u>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u>
	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